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해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20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 박해철 • 박지원 • 김동아

허성무 · 조인철 · 이병진

이재강 · 최민희 · 백승아

이수진 · 임호선 · 김 윤

박용갑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,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 「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 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,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.

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,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56조제1항·제3항, 제156조제1항, 제162조제3호의2, 제170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고용 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"으로 한다.

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(이하 "공단 등"이라 한다)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56조제1항 중 "역학조사"를 "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"로 한다.

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

제170조제2호 중 "고용노동부장관"을 "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	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	
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	
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	
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	
조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
	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필
	요한 경우 관계전문가(이하
	"공단 등"이라 한다)의 참여를
	요청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	③
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	
<u>고용노동부장관</u> 의 원인조사를	<u>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</u>
방해해서는 아니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56조(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	제156조(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
및 지도 등) ① 고용노동부장	및 지도 등) ①
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	
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	
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	
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	
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	

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,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162조(비밀유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 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 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4. ~ 13. (생략)

- 제17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56조제3항(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

중대재해 원
인조사 및 역학조사
<u>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62조(비밀유지)
<u>.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
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자
4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170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

을 훼손하거나 <u>고용노동부장</u> 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

3. ~ 8. (생 략)

3. ~ 8. (현행과 같음)